

# 사업주 지원제도

## 3.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

###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

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.

#### 지원대상

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도입하고, 임신, 육아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

#### 지원요건

- ①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마련(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)
- ②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주 15~30시간으로 단축 근로
- ③ 시간선택제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
- ④ 전자·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(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)

#### 지원내용

구분	내용
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	전환 전·후 시간비례 임금 차액의 일부를 1년간 지원 - 주 15~25시간 : 월 최대 40만원 - 주 25~30시간 : 월 최대 24만원 * 임신 근로자는 주 15~30시간 월 최대 40만원
간접노무비	중소·중견기업에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(정액) 추가 지원(대기업 제외)
대체인력인건비	중소기업 월 60만원 / 대규모기업 월 30만원(인건비의 80% 한도)

#### 지원방법

전환 제도 도입·운영(사업주) → 기존 직원 시간선택제 전환(사업주, 근로자) → 지원금 신청(사업주) → 검토 및 지원금 지급(고용센터)

####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 1350)
- 전국 고용센터([www.work.go.kr/jobcenter](http://www.work.go.kr/jobcenter))